

서울교육대학교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간 에듀테크 및 교육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

서울교육대학교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(이하 “양 기관”이라 한다)은 에듀테크 활성화와 교육·연구 분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상호 신뢰와 협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양 기관의 에듀테크 활성화 및 교육·연구 분야의 상호 교류와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력 분야) 양 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하며,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.

1. 공교육에 적합한 에듀테크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
2. 교육, 연구 및 공동 학술 회의·학술대회 추진
3. 문해력 및 기초소양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공동 기획, 우수 사례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
4. 공동 협력을 위한 인적·물적 자원 교류 및 전문인력 역량 강화에 대한 상호 협력
5. 기타 이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3조(의무사항) 양 기관은 제2조의 협력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 신뢰와 성실로 협력하며,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.

제4조(비밀 유지) 본 협약과 관련된 활동을 통해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상대 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되며,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.

제5조(협약기간) 본 협약의 유효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. 다만, 유효 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, 본 협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된다.

제6조(협약의 변경 및 해지)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에 따라 본 협약이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, 협약 이행 불가일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 단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협약은 해지된다.

1. 양 기관이 협약의 해지를 합의한 경우
2. 어느 한 기관의 협약 위반으로 다른 기관이 협약의 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한 후 1개월이 경과한 경우
3. 단, 이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상호 협력이 진행 중인 사항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.

제7조(효력발생) 양 기관은 협약서에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며, 협약서의 효력은 양 기관이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한다.

제8조(기타) 본 협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석상 의의가 있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2025. 2. 28.



서울교육대학교
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

서울교육대학교
총장 장신호

장신호



한국교육학술정보원
원장 정제영

정제영